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1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진재해대책법」의 개정 및 인용법률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지역본부장”을 “지역대책본부장”으로 개정

(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, 제4조제1항제3호, 제4조제2항 ~ 제3항,
제5조제1항, 제5조제3항, 제5조제5항, 제5조제5항제3호, 제5조제7항,
제6조제1항 ~ 제2항, 제8조제1항 ~ 제2항, 제8조제4항, 제9조제1항 ~
제3항, 제10조제1항 ~ 제2항, 제12조

나.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”으로 개정

(제5조제5항제1호)

다. “한다”를 “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개정

(제5조제3항)

라. “위험”을 “재난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위험”으로 개정

(제5조제7항 본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북구청장(참조, 안전치수과장 전화:901-5902, FAX: 901-5880, E-mail: 2014012377@gangbuk.go.kr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

라. 보내실 주소:(우편번호 142-803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14(미아동) 3층 강북구청 안전치수과

마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
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
입법예고란([http://www/gangbuk.go.kr](http://www.gangbuk.go.kr)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